



# MINI Market Report

국가	말레이시아
제품	사탕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CONTENTS

<b>I. 말레이시아 마케팅 방안</b> .....	<b>1</b>
1. 현지 시장 특징 .....	1
2. 현지 시장 전략 TIP .....	2
<b>II. 말레이시아 시장 정보</b> .....	<b>4</b>
1. 사탕류 수입추이 .....	4
2. 사탕 소비 동향 .....	5
3. 주요 경쟁사 및 제품 동향 .....	6
<b>III. 말레이시아 가격 정보</b> .....	<b>8</b>
<b>IV. 말레이시아 유통 정보</b> .....	<b>10</b>
1. 식품 유통 구조 .....	10
2. 식품 유통 특징 .....	10
<b>V. 말레이시아 통관 정보</b> .....	<b>13</b>
1. 관세 및 기타 세금 .....	13
2. 수입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	16
3. 수입 규제 제도 .....	22
4. 원산지 규정 .....	24
<b>VI. 말레이시아 검역 정보</b> .....	<b>33</b>
<b>VII. 말레이시아 라벨링 정보</b> .....	<b>35</b>
<b>VIII. 말레이시아 바이어 정보</b> .....	<b>38</b>

※ 참고자료

# I 말레이시아 마케팅 방안

## 1. 현지 시장 특징

### □ 현지 소비자 특성

- 수도권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Urban Lifestyle"이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음
- 소비 고급화(Brand). 경제성장, 도시화 등으로 중산층 화이트칼라 계층이 증가하고 있음
-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친환경(Green)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고급 브랜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 현지 유통 특징

- 주요 도시의 대형몰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대형유통업체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
- 말레이시아 상권은 상당수가 중국계(화교)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이들과의 관계형성이 상당히 중요함

### □ 현지 할랄 인증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인 JAKIM(The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은 매우 엄격하여 획득에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JAKIM 할랄 인증신청 시에는 물을 포함해 제품의 원재료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해당 원재료가 할랄인지를 밝혀야 함
- 할랄 인증을 받은 말레이시아 기업 DMG Food Industries Sdn Bhd에 따르면 제품 제작에 쓰이는 원재료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점이 제품 할랄 인증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음

- 예를 들어, 과자제조업체는 특정 과자를 만드는 데 15개의 원료가 들어가는데, JAKIM은 설탕, 소금을 포함한 15개 원재료 모두가 할랄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함
- 과자 제조에 쓰이는 버터는 우유로부터 제조하는데, 우유는 소의 도살과는 관련이 없고 돼지 등 이슬람 혐오 동물과도 관련 없지만 JAKIM은 버터 역시 할랄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 밀가루 역시 밀을 뺀 것이지만, 할랄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
- 이에 원재료가 수입품일 경우 수입된 원재료는 JAKIM이 인정한 할랄 인증 기구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함
- 원재료가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료 공급선을 할랄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로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2.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TIP

- 무슬림 시장 진출 시, 할랄이 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
  - 이슬람 국가에서 정부차원에서 할랄 인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점차 할랄 인증이 비즈니스화되는 측면이 있음
  - 할랄 인증은 초반에 관습법적인 측면이 강했지만 점차 ISO 같은 인증과 같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인증화되고 있음
  - 서구 시장에 ISO 등이 없이 진입하기 어려운 것과 같이 이슬람 국가에는 할랄 인증 없이 진입이 용이하지 못함
  - 최근 전세계적으로 FTA로 인해 국가간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랄이 새로운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식품은 현지에서 낮은 인지도이기 때문에 현지 소비자들 더욱 할랄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할 것임
- 한류 활용한 한국 식품 홍보 활동 필요

- 
-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인지도는 높은 편으로 소비재의 경우 화장품, 식품, 의류 등을 중심으로 Made in Korea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이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전역에 걸쳐 일고 이는 한류 열풍에 힘입은 것으로 한류열풍 지속 및 식문화 유사성으로 한국 농식품 수용도가 높음

## II 말레이시아 시장 정보

### 1. 사탕류 수입추이

□ 사탕류 HS CODE는 「1704.90」로 파악되었음

< HS CODE >

1704.90	설탕 가공식품(화이트 초콜릿 포함) Sugar Confectionary (Including White Chocolate), Not Containing Cocoa, Nesoi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HS CODE 「1704.90」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수입 추이

- 말레이시아의 2013년 사탕류 수입액은 전년 대비 4% 가량 증가한 4,337만 1231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수입국에는 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있음
- 말레이시아의 사탕류 최대 수입국은 태국으로, 2013년 태국으로부터 972만 1,079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4% 가량 증가한 수치임
- 한국은 24위 수입국으로, 말레이시아는 2013년 한국으로부터 3만 460 달러 규모를 수입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7% 감소한 수치임

Malaysia Import Statistics								
Commodity: 170490, Sugar Confectionary (Including White Chocolate), Not Containing Cocoa, Nesoi								
Calendar Year: 2011 - 2013								
NO	Partner Country	United States Dollars			% Share			% Change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3/2012
	World	42062879	41630201	43371231	100.00	100.00	100.00	4.18
1	Thailand	9231432	8491276	9721079	21.95	20.40	22.41	14.48
2	China	6611805	9170079	9644566	15.72	22.03	22.24	5.17
3	Vietnam	7393767	6682314	9342458	17.58	16.05	21.54	39.81

4	Indonesia	9788407	9037201	6784244	23.27	21.71	15.64	- 24.93
5	Singapore	1373527	1516982	2301360	3.27	3.64	5.31	51.71
6	Switzerland	745758	529998	940452	1.77	1.27	2.17	77.44
7	India	957362	649675	645343	2.28	1.56	1.49	- 0.67
8	Philippines	1640826	1322330	644091	3.90	3.18	1.49	- 51.29
9	United States	292605	466148	490064	0.70	1.12	1.13	5.13
10	Germany	437439	583538	454451	1.04	1.40	1.05	- 22.12
<b>24</b>	<b>Korea South</b>	<b>16425</b>	<b>48369</b>	<b>30460</b>	<b>0.04</b>	<b>0.12</b>	<b>0.07</b>	<b>- 37.03</b>

## 2. 사탕 소비 동향

- 말레이시아는 주로 세 종류의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종마다 음식 소비의 특성이 다름
- 말레이시아인, 중국인, 인도인으로 구분 되어지는 말레이시아에는 주로 인도인들이 사탕 소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탕은 주로 젊은 층에서 소비되며, 24시간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음
  - 사탕의 소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주로 저 당류의 사탕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 3. 주요 경쟁사 및 제품 동향

1) CHAP SENG SDN. BHD([www.mrbunny.com.my](http://www.mrbunny.com.my) )

- 말레이시아 과자 및 사탕류 제조/도매/수출입 업체로, 세계 유명 브랜드 유통업체이기도 함
- 주요 제품

<p>제품 이미지</p>			
-------------------	--	---	--

2) WAISUN CONFECTIONERY SDN. BHD(<http://www.waisun.com.my>)

- 말레이시아 과자, 사탕류 제조 업체
- 주요 제품

<p>제품 이미지</p>	
-------------------	--



3) S.K.Heng Food Industries Sdn. Bhd(<http://www.skewin.com.my/>)

- 말레이시아의 사탕 제조업체

- 주요 제품

<p>제품 이미지</p>	 A yellow and red stand-up pouch for 'Special Delight Ginger Candy'. The packaging features images of ginger roots and the brand name 'Skewin'.	 An orange and red stand-up pouch for 'Special Delight Durian Candy'. The packaging features images of durian fruit and the brand name 'Skewin'.
-------------------	--	---

4) OOI BENG HUAT FOOD INDUSTRIES SDN. BHD.

- 말레이시아의 사탕 제조업체

- 주요 제품

<p>제품 이미지</p>	 A dark brown box of 'Mega Candy' with colorful circular graphics and the text 'Mega Candy' and 'WITH CANDY'.	 A colorful box of 'Mega Candy' with a vibrant, multi-colored pattern and the text 'Mega Candy'.
-------------------	--	--

### III 말레이시아 가격 정보

□ 말레이시아 사탕 판매 현황

-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며, 하이퍼마트,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음
- 한편,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탕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전화문의시에만 가격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음

□ Sticky Malaysia 사이트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사탕 제품 가격

제품 이미지			
가격	100g Bag   RM15.00	100g Bag   RM 16.90	100g Bag   RM 16.90
달러	USD 4.58	USD 5.16	USD 5.16

출처 : [http://103.6.196.205/~candycom/wp/?page\\_id=2982](http://103.6.196.205/~candycom/wp/?page_id=2982)

제품 이미지			
가격	100g Bag   RM15.00	100g Bag   RM15.00	100g Bag   RM15.00
달러	USD 4.58	USD 4.58	USD 4.58


출처 : [http://103.6.196.205/~candycom/wp/?page\\_id=2982](http://103.6.196.205/~candycom/wp/?page_id=2982)

※ 가격 비공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본 사탕>

<p>제품 이미지</p>			
<p>가격</p>	<p>가격 전화 문의</p>	<p>가격 전화 문의</p>	<p>가격 전화 문의</p>

출처 : <http://www.100yen.com.my/store/>

<p>제품 이미지</p>			
<p>가격</p>	<p>가격 전화 문의</p>	<p>가격 전화 문의</p>	<p>가격 전화 문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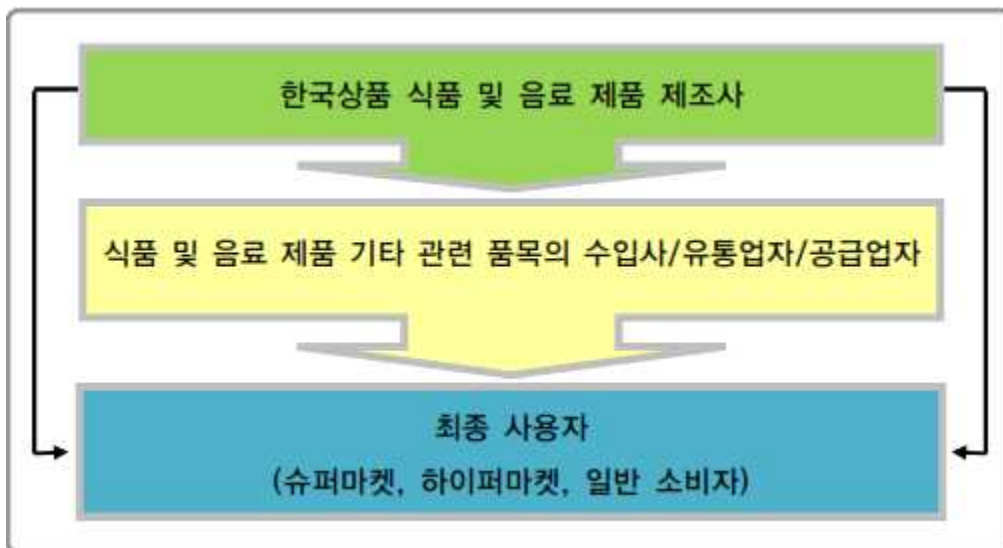
출처 : <http://www.amigokuso.com/index.html>

## IV 말레이시아 유통 정보

### 1. 식품 유통구조

□ 수입 가공 식품의 수직적 마케팅 경로는 대리점 또는 수입사 또는 유통 업자를 거쳐 도매상에게 판매를 하는 방식임

- 유통 업자들은 주로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호텔, 그리고 레스토랑에게 판매를 함
- 도매상들은 더 작은 소매상, 임시 매장, 그리고 식품 및 음료 가게를 담당함



- 말레이시아의 유통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어, 수입상을 통해 수입된 제품은 대부분 대형할인 마켓과 백화점에 납품되며, 대부분의 소비활동의 해당 유통망을 통해서 최종소비자에 도달됨

### 2. 식품 유통 특징

□ 소매 형태

- 말레이시아의 소매 환경은 지난 십년에 걸쳐 변화하였으며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그리고 백화점과 같은 현대적인 형태의 소매 형태가 전통적인 ‘mom and pop’ 매장을 압도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에서 대형식품소매업(MGR) 시장이 점점 더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전망이 밝아 업계 판매액은 2014년 연말까지 50% 증가한 MYR 208억(US\$ 70.2억)에 달할 것으로 봄
- 말레이시아의 MGR 분야는 상당히 분화되어 있으며 소규모 매장, 개방형 시장, 그리고 비영구적인 소매 시설이 매우 많음
-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내 조직적 소매업은 유사한 다른 아시아 시장보다 훨씬 큼
- 조직적 소매업은 이미 말레이시아 식품 판매량의 76%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배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매장 개수로 보았을 때는 이 분야는 말레이시아의 식품 소매업의 35%에 불과함
- 이러한 차이는 현대적 / 조직적 판로로 판매되는 식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에서 기인함
- 현대적 소매 매장은 주로 도시에 위치해 있으나 2011년 이후로 주요 도심지 밖으로의 확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맹공으로부터 소규모 소매업자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하이퍼마켓 분야의 성장을 통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규제는 애초에 과했던 성질과 직접적인 외국인의 투자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점차 완화되고 있음
-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국내 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업자들은 보호적 규제가 있더라도 사업 활동과 투자 수준을 증진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국내 업자들이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
- 하이퍼마켓 분야의 경쟁이 가장 심한 가운데, 강한 셀링 파워, 우월한 수익성, 그리고 높은 투자수익률 덕분에 다국적 기업이 하이퍼마켓에 가장 큰 관심을 보임
- 홍콩의 Dairy Farm Group의 말레이시아 내 자회사가 Giant라는 브랜드로 하이퍼

---

마켓을 선도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Carrefour, 일본의 AEON, 그리고 영국의 Tesco도 진출해 있어 경험이 부족한 국내 소매업자는 그들 틈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가 힘든 상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회사로는 The Store Corp와 Parkson Corp(식품 소매업도 하고 있는 백화점 전문 회사)이 있음
- 현대적 소매업은 제공되는 제품의 다양성과 매장 내 제과점, 요식업 공간, 그리고 조리된 음식 등의 추가 서비스를 좋아하는 부유한 중상층의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음
- 소규모의 전통적인 가게들은 주거 지역에 대한 근접성과 잘 알려진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한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인기가 있음. 하지만 이러한 강점도 현대식 편의점의 부상으로 인해 점점 약화되고 있음
- 현대식 편의점들은 점차 새로운 주거 지역과 마을에 건설되어 전통적인 국내 업체들의 역할을 빼앗고 있으며 편의점의 규모의 경제로 인해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음

# V 말레이시아 통관 정보

## 1. 관세 및 기타 세금

### □ 사탕 관세율

HS CODE	국문품명	구분기호	관세구분	관세율
1704.90.	캔디류	Import Rate	수입세율	15%
		Sale Tax	판매세율	10%
		TRQ	저율관세할당	0

출처 : 관세청

### □ 관세

- 말레이시아에서 수입관세는 대부분 종가세(ad valorem)를 부과하나 또한 많은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기도 함
- 그러나 무역 자유화에 맞추어 현재 다양한 종류의 원자재, 부품과 기계류에 대해 수입관세를 철폐, 인하 또는 면제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하여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아세안 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AFTA)에 따라 역내 특혜관세가 진전되어 역내 협력이 강화됨
- 상품코드 분류 방식은 HS CODE를 채택(세부단위는 9단위까지 분류)하고 있음
- 수입 관세율은 2~30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함
-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3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소수임

- 정부는 사치품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시키고 있음
-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기본적으로 5%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무관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제조 공정상 직접 투입되고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또는 설비의 수입, 공장 건설 또는 시설 확충을 위한 기계 및 플랜트 도입의 경우에는 수입 관세가 완전 면제
-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관세 무역 장벽을 실시하고 있음
- 석유류 및 플라스틱 제품에 20~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준관세 성격의 판매세 및 소비세 부과하고 있음
-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 가격이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높은 이유는 관세율이 높은 측면도 있으나 소비세(Excise Duty)가 높은데 더 큰 원인이 있음
- 승용차(Motorcar)의 경우 75%~105%의 소비세가, 4륜 구동차량(4-wheel drive)의 경우 60%~105%의 소비세가 부과
- HS 8703(승용차)의 경우 FTA가 없을 때는 10%~ 30%의 관세가 부과
-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에 의거 HS 8703(승용차)의 관세는 0%가 적용
- 나아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0~5%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아세안 공동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CEPT) 제도를 준수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지속적으로 상품교역, 원산지 규정 및 투자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 현재까지 말레이시아는 일본, 파키스탄, 뉴질랜드 및 인도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고, 중국, 일본, 한국, 호주/뉴질랜드 및 인도와는 아세안 산하국가로서 지역자유무역협정들을 체결하였음



- FTA 당사국들 간의 수입관세는 이 협정들에 정한 구체적인 관세 인하 및 철폐 일정에 따름
- 관세 항소법원(Customs Appeal Tribunal, CAT)은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1975년 서비스세법 및 1976년 국내소비세법에 정한 사항에 관한 관세청장(Director General of Customs)의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재심 청구에 대해 심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기구
- 또한 관세청 판정은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1975년 서비스세법 및 1976년 국내소비세법에 의거해 기업부문의 사업 활동 계획에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관세청이 내린 판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당해 판정은 일정 기간 신청인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음
- 관세청 판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상품의 품목 분류, 관세 부과대상 서비스 여부 판정 및 상품과 서비스의 가액결정 원칙에 관해 관세청 판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관세청 판정 신청은 충분한 사실 자료와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상품 수입 또는 서비스 제공 전 사전에 관세청 판정을 신청하여 관세청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 반덤핑 및 상계관세

-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 및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으며, 중간재 수입, 가공 후 완제품 수출 형태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무역 제재가 미미한 편으로 연간 반덤핑이나 보조금 조사 건수는 평균 1건 정도에 머물고 있음

#### □ 관세면세 제도

- 불가피한 누출, 파손, 기타 사고에 의해 특히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량이 부족해진 경우, 관세국장은 부족한 물품에 대해 관세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면제할 수 있음

- 물품이 재수출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입된 경우
  - 국내 소비용으로 수입된 때 부과되는 관세 없이 수입, 운송을 허가받음
  - 관세 국장이 만족하는 수준의 담보를 제공하여 수입, 운송을 허가받은 후, 물품 수입 3개월 이내 또는 관세국장이 허가하는 기간 이내에 물품이 재수출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무역 전본으로 신고한 수출품은 관세가 면제되어 재수입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 중에는 판매세가 있음
- 판매세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과세 대상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용, 처리, 또는 수입한 과세 대상 물건의 가격에 해당하는 종가세의 형태
- 과세 대상이 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판매세를 징수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지만 연간 매출액이 10만 링깃 미만인 제조업체는 라이선스 면제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음

## 2. 수입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 통관 절차

- 수입 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 (customs duty), 판매세(sales tax) 및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될 수 있음
-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브로커 및 중개인이 수행하는데 선적된 물건에 대해 관세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Bill of lading or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Import (C1) Declaration
- 또한 다음의 서류들 또한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 Import License, Permit, and/or Letter of Approval for regulated commodities
  - Foreign Exchange Control documents for export shipments of 100,000 ringgit or greater F.O.B value
  - Certificate of Origin of the goods(FTA에 의해 낮은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 Letter of Credit(endorsed) when used as payment method for the shipment
  - Packing List (상업송장이 정확한 수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CIA Value Declaration Form
- 선적 물품이 도착하고 난 후나 도착 이전에 선적 관련 서류들에 대해 검토하여 정밀 검사 또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
  -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브로커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하게 됨
  - 한편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수입 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마무리 됨

< 수입 통관 절차 >

1. 물품 도착

적하목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운송회사)는 수입 물품이 입항지에 도착 후 일정 기간 내에 적하 목록(Manifest)을 제출해야 함</li> <li>- 선박 : 물품 도착 후 24시간 이내 물품이 하역되기 전</li> <li>- 항공기 / 철도 : 물품이 도착한 시점에 세관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li> <li>- 자동차 : 수입지에 도착한 때</li> </ul>
---------	--



2. 수입신고

신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신고서(Customs Form No.1)의 작성 및 제출</li> <li>- 특정 물품(설탕, 모터사이클 등)은 수입 전에 라이선스를 신청(J.K 69 Form) 및 취득하고,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li> <li>- 수입신고서는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증빙(구비)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함</li> <li>-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L/C등 은행 서류 등</li> </ul>
--------	---



3. 관세납부

납부 방법 등	-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모든 조세는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 모두 납부
---------	---

	<p>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등 조세는 현금, 수표 또는 은행 어음으로 납부되어야 함.(수표에 의한 납부의 경우 은행의 보증이 확인 되어야 함)</li> <li>- 관세 등은 수입 물품이 반출되기 전 수입된 장소 관할 세관에 납부되어야 함</li> </ul>
--	---



4. 물품 검사 및 반출

4-1.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심사 및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검사는 세관에 수입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행되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짐</li> <li>- 수입 신고된 물품이 상업 송장 및 수입신고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며 진실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li> <li>- 수입 물품이 관세법 등 규정에 의해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대상 물품인지 여부</li> <li>-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물리, 화학적 정보 및 사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 확인</li> <li>- 과세 대상 수량의 확인</li> <li>- 세관은 물품 검사를 위해 테스트 샘플을 수집할 수 있으며, 물품 검사와 관련해 발생한 포장제거 및 재포장 등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함</li> </ul>
---------	--



4-2. 물품 반출

물품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다수의 수입물품은 물품검사 없이 수입신고서의 수리에 의한 물품 반출이 허가됨</li> <li>- 물품검사는 전체 화물의 10%정도(필요한 경우 100%)가 대상이며, 검사 후 이상 없는 경우 물품 반출이 허용됨</li> </ul>
-------	--

출처 : 관세청 해외 통관지원센터

-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하여야 함

□ 수입통관 단계별 유의사항

1) 수입 신고 전 준비

- 다강네트 시스템을 통해 운송중인 물품에 대한 모든 과정을 체크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전기전자, 철강 기계, 자동차 등에 수입 관리 및 허가제도가 존재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함. 통관보다 수입허가를 받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함
- FTA 적용 희망 시 한국(관세청, 대한상의)에서 원산지증명서(C/O)준비 - 기재상 사소한 실수도 특혜관세 적용 배제하므로 'HS코드와 원산지기준' 철저히 확인 필요

2) 수입신고

- 포워딩 업체는 통관을 위한 포워딩 자격증이 필요하며 매년 관세교육 1회 이수 후 관세사 자격시험과 비슷한 시험을 보며 2년 단위로 갱신해야함
- 세관 서류와 관세납부는 물품이 도착하기 14일 전에 처리할 수 있음(선하증권, 허가서, 선적 적하 목록 등을 제출하고 선박의 예상 도착 시간을 확정해야함)

### 3) 심사 및 검사

- 통관이 어렵지는 않으나 한번 적발이 되면 라이선스가 취소되며, 3년 소급하여 벌금을 부과하니 유의해야 함
- 수입 허가, 승인 품목인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Customs Golden Client 제도는 Green lane 특권을 이용할 수 있고, 최소한의 데이터와 서류만으로 통관할 수 있으며 관세를 정기적으로 사후 납부할 수 있음

### 4) 관세 납부

- 관세 납부 후 관급보다는 LMW(보세제조창고)허가를 받아 처음 통관부터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이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경우(특히 보세창고의 석유 제외) 세관의 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이동시키는 날의 관세율을 적용함

## □ 수출입을 위한 물류 인프라

### 1) 공항

- 한편 국제공항은 1998년 6월말 개장된 KLIA(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를 비롯, 반도 북부에 Penang, 반도 남부에 Senai(Johor Bahru), 동말레이시아에 Kuching, Kota Kinabalu 등이 있음
- Kuching 공항은 동말레이시아의 Sarawak주에 위치해 있으며 Kuala Lumpur를 출입하기 위한 중간 경유지(Transit)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재 수도권외의 신공항인 KLIA가 기존 수방 공항을 대체, 모든 항공 운행은 신공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수방 공항은 일부 특수 노선 공항 및 정비 기지로 이용되고 있음
- 연 이용객 수가 2,500만명에 육박하여 10억 달러를 들여 제2청사도 완공했음
- KLIA 근처에 저가 항공사 전용 터미널(LCCT)도 건설되어있음
- 신 국제공항 개요
  - 공항 명칭: KLIA(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 Sepang
  - 위치: 콤라룸푸르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75km 지점에 위치
  - 시내로부터의 소요 시간: 자동차로 1시간 내외(고속도로 이용), 고속전철 28분

2) 국제 항구

- 말레이시아 Service Port 현황
- 말레이시아에 총 11개의 주요 Container Port가 있으며 그 중 4개 Port는 말레이반도에 그리고 나머지는 동말레이시아에 위치해 있음
- Bulk 화물의 경우 상기 11개 Port외에 Terengganu에 Kemaman Port가 있어 Liquid Bulk 화물인 경우 Kemaman Port 이용율도 상당함
- 말레이시아 중부의 길목인 Port Kelang항은 제 1항구로 콤라룸푸르로부터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North Port와 West Port로 구성되어 있음
- KELANG 항이 전체 항만 물동량의 46%를 차지하며 1999년 10월부터 오픈한 조호주의 Tanjung Pelepas가 2대 항구로 전체 물동량의 37%를 점유하고 있음

□ 주요 통관 대행사

회사명	주소	연락처
Issagami Sdn Bhd	77, 2nd Floor, Jalan SS22/19, Damansara Jaya, 47400 Petaling Jaya,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Tel : +60-3-7726-5700 Fax : +60-3-7726-5711 홈페이지 : www.issagami.com
Loon On Forwarding	9A Jalan Berangan 42000 Port	Tel : +60-3-3168-8164

& Shipping Sdn Bhd	Klang,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Fax : +60-3-3167-7317
Peninsular Freight Sdn.Bhd.(Pantas Freight Services Sdn. Bhd.)	Lot 6465, Persiaran Sungai Puloh, 6th Mile Off Jalan Kapar, 42100 Kapar, Kl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Tel : +60-3-3291-0000 Fax : +60-3-3291-0100 홈페이지 : www.penfrt.com
NYS Shipping & Forwarding Sdn Bhd	Lot 41, Solok Sultan Mohamed 1 Pusat Perdagangan Bandar Sultan Suleiman, 42000 Port Klang, Selangor	Tel : +60-3-3176-8811 Fax : +60-3-3176-5511 홈페이지 : www.nys.com.my
ABLE FREIGHT FORWARDING SDN BHD	Block A-6-3A Jalan Intan 1/KS1, Intania Klang, Teluk Gadong Besar, 41200 Klang, Selangor, Malaysia.	Tel : +60-3-3373-7225 Fax : +60-3-3371-9829 홈페이지 : ww.abletech-my.com
OAL Freight Forwarding Sdn Bhd.	No: 11 & 11A Jalan Impian Emas 5/5 Taman Impian Emas 81300 Skudai, Johor, Malaysia.	Tel : +60-7-557-7088 Fax : +60-7-558-6066 홈페이지 : www.oal.com.my

□ 수입 허가 제도

- 보건, 위생, 지적 재산권 및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과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품목은 수입허가가 필요함
-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일반적으로 각 승인은 하나의 위탁 화물에 주어짐

<제품별 허가부처>

제품	허가부처
쌀	농업부
자동차, 철강, 소비자 통제제품	국제통상산업부
전기통신 및 무선통신	SIRIM
사카린 및 소금	건강복지부
미가공 담배	국가담배위원회

- 종종 수입 허가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함
- 예를 들어 일부 철강 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별도 MITI(국제통상산업부)의 수입 허가를 내주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함

- 현지에서 구할 수 있거나 생산이 가능한 경우 수입 허가의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 통상 수입 허가 발급에는 7~1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모든 수입 허가는 양도될 수 없으며 3개월간 유효함
- 승인서 발급 과정이 복잡하여 승인서가 수입 허가 역할을 하고 있음
- 수입허가는 통계상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자동 발급되지만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나 사업체가 아닌 개인 수출업자는 수입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

### 3. 수입 규제 제도

#### □ 수입 규제 제도

-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입금지 제도 및 수입허가 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음
-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함. 대부분의 경우 수입허가 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 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 / 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행됨
- 말레이시아는 기자재와 부품 등을 수입하여 중간재 가공 후 완제품 수출 형태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제재가 미미한 편임
- 보호무역주의라 할 수 있는 자국산업 보호정책으로 제2차 경기부양책(2009년 3월발표)에서 200만링깃(약 56만달러)이 자동차 개발펀드(Automotive Development Fund)에 배정됨
- 팜 오일에 부과되는 세금(Windfall profit levy)은 현재 팜 오일 가격이 톤당 2,00링깃을 넘는 분에 대해 부과하고 있지만, 생산비용이 최근에 늘어남에 따라 그 기준을 톤당 2,500링깃(사바, 사라왁지역은 3,000링깃)으로 올림
- 말레이시아 정부는 50억링깃(약 14억달러)을 산업구조조정보증기금 계획(Industry Restructuring Guarantee Fund S초든)의 대출보증금으로 배정함
-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는 상계 및 반덤핑에 관한 법(1993년 7월 15일



발효)과 관련 규정(1994년 4월 28일 발효)에 근거하고 있으며 수입 규제 관련 최근 큰 변화는 없음

- 반덤핑 조사 및 판정은 MITI(국제통상산업부)내의 Trade Practices Unit이 담당하며, 최종 판정은 MITI장관이 결정함
- 2009년 8월 1일 철강 수입 규제가 조정되어 HRC(Hot-rolled coils), CRC(Cold-rolled coils), EGI(Electro-galvanized iron) 제품에 대한 현지 조달 제품과 수입 제품 간의 고정비율을 폐지하였고, 2010년 1월 1일부터 5%로 관세가 인하됨
- 철판의 수입 관세도 2009년 8월 1일부터 50%에서 25%로 인하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0~10%로 인하될 예정임
- 수출용 완제품 생산의 원재료로 사용될 경우, 현지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급 및 스펙의 제품일 경우, 수입관세가 없는 완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제품일 경우에는 철판(HRC, CRC, EGI 포함)의 수입관세를 면제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8년 9월 22일자로 한국,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국産 신문용지(roll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재심을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최근 2009년 3월 21일부터 2014년 3월 18일까지 관세를 몇몇 기업에 대해 연장해서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최초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한국기업의 당해품목 對말레이시아 수출물량은 미미한 수준임
- 수입 규제 말레이시아는 종교, 윤리, 안보 및 환경보호를 위해 16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함

<말레이시아의 수입 금지 품목>

수입 금지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조 화폐</li> <li>- 공서양속, 사회 안녕을 해치는 휘장(emblem), 또는 고안품(device)</li> <li>-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 테이프, 레이저 디스크 등</li> <li>-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li> <li>- 단검</li> <li>-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li> <li>-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li> <li>- 아비산 나트륨(Sodium Arsenite)</li> </ul>

-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 피라냐(Piranha fish) 어족류
- 거북이 알
-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 독성 화학물
-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tremolite) 피뢰기(lightning arresters)
- 미가공 통나무
- 눈길용 고무타이어(신제품 및 재생제품)

## 4. 원산지 규정

### □ 한·ASEAN FTA 內 원산지 규정

-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대한 내용은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서 기술되어 있음
- 가. 부속서 3에 따르면 상품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부속서 3, 제3조).
- 나.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재배된 후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상품
- 다.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라. 나호에서 규정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마.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수행된 수렵, 텃사냥, 어로, 양식, 수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바. 당사국 영역내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취득된 상품으로서 가호 내지 라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 및 다른 자연 발생 물질
-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취득된 어로 생산품이거나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취득된 다른 어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 대하여 자연자원을 탐사할 권리를 국제법상 가져야 함

- 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취득된 어로 생산품 및 그 밖의 수산물
  - 자.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선상공장에서 전항에 규정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그리고/또는 만들어진 상품
  - 차.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되어야 함
  - 카.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원재료의 부품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
  - 타.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1)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의 회수용으로만 적합하여야 함
  - 파. 가호 내지 카호에 규정된 상품으로부터만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 생산에 2국 이상이 관여한 경우에는 부속서 2의 부록 2에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명시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만족하거나 부록 2에서 규정되고 있는 품목이 아닌 경우,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이 FOB\* 가격의 40% 이상이거나 HS 4단위에서 세번변경(稅番變更)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함
- 한-ASEAN FTA에서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원산지인정 문제는 협상에 있어 매우 첨예한 대립을 가져온 이슈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낮은 발전단계에 있는 ASEAN 회원국을 중심으로 협상 초기에 한국이 개성공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하여 높은 경계심을 보임
  - 부속서 3의 제6항 ‘특정품목의 취급’ 에서 실질적으로 역외가공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인정을 허용하였고 이 조항에 적용되는 특정품목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ASEAN의 특혜관세혜택을 이끌어냄
  - 이러한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의 인정은 양측 경제장관들 간의 교환각서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ASEAN 회원국은 역외 (개성) 투입 (재료비 외에 운송비 등 제반 비용 포함)의 총가치가 최종재화 FOB 가격의 40% 이

---

하이코 일방 당사국(한국) 재료의 총가치가 최종재화 생산에 이용된 총 재료 가치의 60% 이상인 경우 (개성에서) 역외가공된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데 합의함

- 교환 각서에서 각 ASEAN 회원국은 개성공단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예정인 품목(232개 품목) 중 100개 품목을 선정하여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통한 특혜 관세를 부여하도록 함
- ASEAN 회원국들이 선정한 품목들을 보면 개성공단에 생산 또는 생산예정인 품목이 비교적 골고루 선정되었고 의류(24.8%), 시계(17.9%)의 순으로 허용한 품목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개성에서 역외가공된 제품의 ASEAN 수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ASEAN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개성공단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자국의 국내산업에 위협이 되는 경우 ASEAN 각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러한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전까지 한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에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양측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성공단의 실시 및 시행과 관련한 부속서 3의 제6조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협정이 발효하고 5년이 지난 후에(anytime 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ASEAN 회원국 각국이 개성공단을 다루는 제6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 본 양해각서의 적용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ASEAN측에 안전장치를 제공함
- ‘특별 긴급수입제한’ 이나 ‘5년 후 철회 조항’ 과 같은 ASEAN의 의견이 반영된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개성공단의 상황과 한국의 진출 업체의 주력 수출시장이 미주-구주 시장인 점을 고려할 때, 협정 발효 5년 후에 개성공단 제품이 ASEAN 시장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 또한 한-ASEAN 정치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ASEAN 회원국들이 이러한 안전장치를 발동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대상국 및 발급방식

- 2007년 6월 1일 한-아세안 FTA 발효로 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중 FTA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상공회의소(개성공단제품 제외)와 세관에서 발행하고 있음

□ 원산지 결정 기준

- 일반품목 : CTH 또는 RVC 40% 이상
- 예외품목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규정(품목별 각기 다른 원산지 기준적용)
-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 : 완전생산품 기준 적용 물품을 제외하고 실질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HS4단위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RVC 40% 이상)을 적용
- 역내부가가치비율(RVC) 계산법
  - 공제법 :  $RVC = [ (FOB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FOB ] \times 100$

□ 대상국 및 품목확인

- 한.아세안 FTA 협정 대상국(대한민국,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 태국) 확인 후 수입국 기준 HSCODE 10 단위를 입력하여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협정관세율을 확인
-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되는 품목인지 확인
- 완전생산기준 : 원산지국가에서 100%생산된 제품과 이를 재료로 만든 제품  
예) 농축산물, 광산물 등

□ 실질변형기준

- HS변경기준 : HS2단위, 4단위, 6단위 등 변경국가 (협정별 상이)
- 부가가치기준 : FOB, EXW가격기준 일정비율 이상 부가가치 창출 역내누적부가가치 적용시 최종생산국이 원산지

□ 가공공정기준

- 특정한 가공공정 수행시 원산지 인정
- 복합기준 : 상기 기준을 2개 혹은 그 이상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 부가가치 40% + HS 4단위 변경, 부가가치 50% + 봉제, HS변경 + 봉제 등

□ 발급기간 : 서류 접수 후 3일 이내

□ 현지 확인이 요청되는 기준

-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 비율이 5%를 초과하는자
- 전년도에 법, '관세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생산 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예 :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증명서 작성방법

- 1항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수출자/수출자의 상호명, 주소, 수출국을 기재
- 2항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 수하인
- 3항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 (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아는 범위 내에서 기재
- 4항 For Official Use :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
- 5항 Item number :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

- 6항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기재
- 7항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 포장개수 · 포장형태 · 품명 · 수량 · 품목번호 등을 기재
  -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하고, 제조자의 성명 및 상표도 기재
  - 품목번호(HS Number)는 수입당사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기재
- 8항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 수출자 (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기재

생산 또는 제조 형태	기재방법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WO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CTH 또는 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 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3) 일정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 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CTC WO-AK RVC % (예: RVC 45%) CTH + RVC % Specific Process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Rule 6

- 9항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기재
- 10항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기재
- 11항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수출자 (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기재한 후 서명
- 12항 Certification
-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발급장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
- 13항
- 다음 구분에 따라 “√” 표시를 함
-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함.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명 및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함
-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함
-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 표시를 함

□ 제출서류

- 수출신고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출신고번호 입력으로 대체)
-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Ak-C/O 입력 신청서식에 포함)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원산지 입증서류
- 세 번 변경 기준(CTH, CTC 등)
- 세 번 변경 입증서류(예 : 원재료 구입 명세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메뉴얼, 홍보책자, 수입신고필증 등)

□ 부가가치기준(RVC)

-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 수입신고필증 등)
- 수출용원재료 원산지 (포괄)확인서 : 원부자재 공급한 업체가 작성
- 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 B/L사본과 사유서 : B/L (선적후 신청시), 사유서 (선적 30일 경과후 신청 시)
- L/C사본 등 계약서류 (원산지증명서 원본 2부이상 발급 시)

□ 원산지 확인서 기재요령

- 1항 생산자 : 생산자의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생산공장 지정번호
- 2항 수출자 : 수출자의 이름, 주소
- 3항 품목, 규격 :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 및 계약번호 기재
  - 계약번호를 모를 경우 세금계산서 번호, 주문서 번호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

---

## 호 기재

- 4항 HS번호 : HS 6단위 기재
- 5항 원산지결정기준 :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RVC 40% 또는 CTH 등 ) 기재
- 6항 부가가치 : 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공제법 (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D" 기재
- 7항 원산지 :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기재
- 8항 비고 : 송품장(invoice)이 비원산지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의 성명, 회사명, 주소를 기재
- 9항 제조업체 (생산자) : 제조업체의 담당자가 작성한 후 회사명판인감을 날인해야 함

## VI 말레이시아 검역 정보

### □ 검역

- 관세국과 관세청은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며 주류, 동물 및 관련제품, 건강의료식품, 육류와 그 가공물, 식물 및 관련제품, 가금류와 그 가공품 제품 수입 시에는 각각의 책임 기관으로부터 허가과 인가가 필요함
-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명된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 후 수입 허가증을 발부 받음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됨(단, 서류 심사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서류 내용 보완 후 재심사를 요청가능)

### □ 식물 및 식물성 제품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식물 및 식물성 제품은 유해성 농작물 규정 법안 1981 (Agricultural Pests and Noxious Plants Regulations 1981)의 지배를 받으며 현행 식물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식물 위생 증명 신청 (Applications for Phytosanitary Certificate)은 검사 시간 4일 전까지 검역소에 도착해야 함. 또한 농업부 장관이 발행하는 수입 증명서도 필요함

### □ 가축 및 조류

- 수의검역부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가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가축과 조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검역 시설을 제공함
- 가축 법령 1953, 가축법 1962, 가축 수입 규정 1962 그리고 연방 가축 검역법 1984가 가축의 수입허가와 관련된 법률이며 말레이시아로 가축 및 조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 증명서와 건강 진단서가 필요함

### □ 육류 (돼지고기 제외)

- 수의검역부가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육류가 위생적이며, 건강하고 소비하기에 적절한

---

지에 대해서 검사를 함

- 도살법 1975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육류 제품은 하랄 (halal) 인증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말레이시아 수의 및 종교 당국 (JAKIM)이 지정한 도살장에서 도살된 제품이어야 함
- 그리고 모든 육류는 도살장과 정육 포장 공장의 지정 번호와 생산 일자, 도살형태 (무슬림법에 맞게 했는지) 등을 표시해서 라벨링 되어야 함

## VII 말레이시아 라벨링 정보

### □ 수입 인증 제도

- 재무부 산하의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이라는 정부 소유 회사가 있어 산업연구 및 개발뿐만 아니라 제품 표준 및 품질 관리의 역할을 수행함
- SIRIM CERTIFICATION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인 인증임
- 이 인증은 1965년 회사법하에 설립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받을 수 있는데 인증 발급은 자발적이지만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SIRIM마크를 획득하여야 함

<의무 인증 제품과 규제기관>

의무 인증 제품	규제기관
Motorcyclist Safety Helmets	Road Transport Dept.
Motorist's Seatbelt	Road Transport Dept.
Electrical Appliances	Energy Commission, EC
Gas Appliances	Energy Commission, EC
Fire Safety Products	Fire & Rescue Services Dept.
Cement, Ceramic tiles & Ceramic Sanitary ware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CIDB
Communication equipment	Malaysia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Commission, MCMC
New generation of diesel engines	Department of Environment, DOE

-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는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인증, 검사, 시험 기관으로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

□ 라벨링

- 바하사 말레이어를 제품의 패키지에 꼭 사용해야만 하고 영어는 제2의 언어로 사용함
- 모든 제품은 생산자, 수입자 또는 도매업자의 이름, 원산지, 내용물, 제품의 이름 정보가 꼭 들어가야 함
- 해당 식품이 물, 식품 첨가제, 영양 성분 이외에 2가지 이상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재료는 중량의 순서로 기재되어야 함
- 수입품의 경우 제조업체명과 주소 또는 에이전트명, 말레이시아의 수입 업체명, 원산지 등을 병기해야 함

□ "Nutritional Labeling" 과 관련된 요건

- "Nutritional Labeling" 이라함은 식품의 포장과 관계되어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영양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주기 위함임
- 다음의 식품의 경우 Nutritional labeling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 시리얼, 제빵류, 분유 및 우유, 통조림 육류, 통조림 생선, 통조림 야채, 통조림 과일, 과일 주스, 샐러드 드레싱, 마요네즈, 청량 음료, 두유 등
- 식품 라벨링과 관련해 다음의 항목을 병기해야 함
  - 에너지량은 킬로칼로리 (kcal), 킬로줄 (KJ), 100g당 또는 100ml당, per package 등으로 명시해야 함.
  - 단백질, 식이성 섬유를 제외한 탄수화물, 지방은 100g당 또는 100ml당, per package 등으로 명시해야 함
- 병에 담아서 파는 음료는 총 설탕의 양을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함
  - Carbohydrate .....g
  - Total sugars .....g
- 지방산의 양이나 형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고도불포화지방산 그리고 트랜스지방산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함

- Fat .....g
- comprising of monounsaturated .....g
- polyunsaturated .....g
- saturated .....g
- Trans fatty acid .....g

- 기재되는 에너지량은 다음의 전환율 (Conversion Factor)를 사용해서 계산되어야 함

- Carbohydrates 4kcal/g (17kJ) ;
- Protein 4kcal/g (17kJ) ;
- Fat 9kcal/g (37kJ) ;
- Alcohol 7kcal/g (29kJ) ;
- Organic acid 3kcal/g (13kJ) ;
- Dietary fibre 2kcal/g (8.5kJ) ;

- 기재되는 단백질량은 다음의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함

- 단백질량 = 총 Kjeldahl Nitrogen x 각 식품의 전환율

- 비타민과 미네랄의 수치는 100g당, 100ml당 또는 per package등으로 표시되고 추가적으로 100g당, 100ml당 또는 per package의 NRV로 표시되어야 함

- 콜레스테롤과 식이섬유의 양은 100g당, 100ml당 또는 per package 등으로 표시되어야 함

---

## VIII 말레이시아 바이어 정보

---

※ 바이어 리스트는 별도 엑셀 파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참고자료

- 말레이시아 관세청 : <http://www.customs.gov.my/>
- 말레이시아 재무부 : <http://www.treasury.gov.my/>
- 식품조합(Food Association) : <http://www.vietfood.org.vn/en/>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 <http://www.miti.gov.my/>
- 말레이시아 제품표준 및 품질관리 : <http://www.sirim.my/>
- : <http://www.vfa.gov.vn/>
- : <http://www.mard.gov.vn/en/Pages/default.aspx/>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www.qia.go.kr](http://www.qia.go.kr)
- 농수산물식품 수출지원정보 : <http://www.kati.net/>
- 관세청 :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GTA : <http://www.tradestatistics.com/gta/>